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8회 임시회(2020. 5.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       |
|----------|-------|
| 의안<br>번호 | 20-37 |
|----------|-------|

2020. 5. 20.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필레 의원 외 7인

나. 제 안 일 : 2020. 5. 13.

다. 회 부 일 : 2020. 5. 13.

### 2.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마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진방재사업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5. 13.~ 5. 17.(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지진 피해 안전을 위해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 마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지진재해” 및 “지진방재”에 대한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라 인용한 조문임.
- 제4조는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근거할 때 법령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 상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 반영된 사항으로 마포구 지진방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마포구는 지진방재와 관련하여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물리적 시설 보강에 주안점을 두어 왔었고, 대 구민 교육·훈련 등 각종 방재 사업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음을 감안하면,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과 방재사업 추진으로의 전환적 차원의 명시적인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 이로서 매년 시행되는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관한 재난관리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례안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좀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운영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임.

#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약칭: 지진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